본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413호

의 안 명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의 결 일 2026. 9. 21.

주 문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 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2026. 9.

국민권익위원회

본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일반 현황 ····· 2

Ⅲ. 현황 및 문제점 ····· 5

1 법률과 지침 간 중복급여 조정 기준 불일치 ····· 5

2 중복급여 조정을 위한 사전관리체계 미흡 ····· 11

3 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 ····· 12

Ⅳ. 개선방안 ····· 13

1 「국민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조정 기준 정립 ····· 13

2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15

3 중복급여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 마련 ····· 15

Ⅳ. 조치사항 및 기한 ····· 17

붙임 1. 관련 법령 ····· 18

본

I. 추진배경

○ 국민연금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로,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특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 수행

※ '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 4,633명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790만 2,646명[1)]

○ 한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과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1/2만** 지급하는 **중복급여 조정제도 운영**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그러나 연금공단 지침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범위 보다 확대**하고 있어 사고나 사망 직후 생계가 불안정한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

▪ **[국민신문고]** 아버지는 지병이 원인이 되어 출근길에 돌아가셔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산재신청 기간인 5년이 지나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유족연금의 1/2인 95,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 ('23.8월)

-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에 한해 국민연금공단과 정보를 연계하고 있어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

○ 이에, 법령 기준에 맞는 중복급여 조정 체계를 정립하고, 공단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국민의 수급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후정산 체계 확립** 필요

1) 국민연금 공표통계(2026년 2월 기준)

본

Ⅱ. 일반 현황

□ 국민연금제도 개요

○ **(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

- 소득에 비례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개시 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제외

< 가입대상 상세 분류 >

구 분	가입대상	비 고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사용자	당연가입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단, 적용제외자[2]는 제외	당연가입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한 자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자	60~65세 미만인 사람 중 임의계속가입 신청자	임의가입

○ **(연혁)** '88년 최초 시행, '99년부터 전 국민연금으로 확대

※ ('88.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제도 도입
('95.7월) 농어촌 거주자 당연가입으로 확대
('99.4월) 도시지역 자영자 당연가입 확대 (전 국민연금 시행)

2) ①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자, ②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③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자, ④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⑤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본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구 분	내용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가입자가 수급연령 도달 시 지급
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 (단 장애 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한 경우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없는 경우 지급

* 유족의 범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4순위)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

□ 국민연금 가입자 수 등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수)** '25.12.31.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 4,633명[3)]

(기준: '25.12.31., 단위: 명)

구 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계	21,814,633	14,615,523	6,410,507	333,717	454,886
남자	11,784,124	8,275,127	3,302,680	65,604	140,713
여자	10,030,509	6,340,396	3,107,827	268,113	314,173

3) 국민연금 공표통계

본

○ **(국민연금 수급자 수)** '25.12.31.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790만 2,646명[4]

(기준: '25.12.31. 해당연도 누계, 단위: 명)

계	연금수급자				일시금수급자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7,902,646	7,682,622	6,486,471	75,787	1,120,364	220,024	2,531	199,383	18,110

※ 국민연금 최초 시행해인 '88.1.1.부터 '25.12.31.까지 수급자 수는 2,069만 278명

○ **(국민연금 수급금액)** '25.12.31. 기준 해당 연도의 수급금액 누계는 49조 6,604억 6,900만원[5]

(기준: '25.12.31. 누계, 단위:백만원)

계	연금수급자				일시금수급자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49,660,469	48,168,241	43,775,267	447,775	3,945,199	1,492,228	54,598	1,325,378	112,252

○ **(국민연금기금 규모)** '25.12.31.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457조 9,963억원[6]

(단위: 억 원)

구 분	계	전년말 운용금액	조성금액*	지출금액**
2021년	9,487,194	8,337,276	1,448,668	△298,751
2022년	8,904,657	9,487,194	△234,328	△348,208
2023년	10,357,946	8,904,657	1,852,021	△398,732
2024년	12,128,513	10,357,946	2,215,951	△445,384
2025년	14,579,963	12,128,513	2,956,258	△504,808

* 조성금액: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결산잉여금 및 국가보조금

** 지출금액: 연금급여지급 및 관리운영비

4) 국민연금 공표통계
5) 국민연금 공표통계
6) 국민연금 공표통계

본

Ⅲ. 현황 및 문제점

1 법률과 지침 간 중복급여 조정 기준 불일치

현 황

○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급여(연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1/2 지급**(「국민연금법」 제113조)

* **(「근로기준법」)** 장해보상,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선원법」)**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 국민연금법 >

✔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다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을 위해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이하 '연금공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본

< 연금공단 지침 주요내용 >

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및 시기

1.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①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다른 법령 상의 급여(보상)* 수급권자 동일

② 장애 또는 유적연금과 다른 법령상 급여(보상)의 지급사유 동일

③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상의 급여(보상)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함

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중복급여의 조성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급여의 조정대상이 됨**

-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하여 6개월 주기로 재해보상금 수령여부를 확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되는 급여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치유될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됨

Ⅱ.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업무처리 절차

1. 재해보상금 수령 후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 재해보상금 수령사항 확인 후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2. 급여의 지급청구를 먼저 한 경우

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하되, 추후 재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을 해제하고, 미지급분(1/2)을 추가 지급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거나 재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보류

○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현황)**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우선)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1/2만 지급한 건은 9,149건, 그 금액은 약 623억 9,550만원

- 이중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중복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1/2을 지급한 사례가 약 21%***에 달하며, 해당 수급권자는 **약 19개월간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아 생활고 등 불편을 겪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1,882건, 금액은 약 64억 5,951만원

<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현황 >

(단위: 건, 만원)

구 분	유족연금				
	50% 지급*		추후 나머지 50%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21년	1,742	1,714,945	461	190,808	26.5
'22년	1,833	1,597,703	416	164,213	22.7
'23년	1,774	1,296,514	393	135,264	22.2
'24년	1,870	994,539	392	113,941	20.9
'25년	1,930	635,849	220	41,725	11.4
합계	9,149	6,239,550	1,882	645,951	20.6

* 50% 지급 건수는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여 향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 국민연금 50%를 감액한 '우선 중복조정 건수'와 **법률에 따른 '중복조정 건수'가 합쳐진** 수치임

** 50% 지급 건수와 비교(추후 나머지 50% 지급 건수 / 50% 지급 건수)×100

○ **(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현황)**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우선)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1/2만 지급한 건은 3,717건, 그 금액은 약 434억 5,064만원

- 이중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중복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1/2을 지급한 사례가 약 9%***에 달하며, 해당 수급권자는 **약 23개월간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아 생활고 등 불편을 겪음(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325건, 금액은 약 26억 4,174만원

본

< 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현황 >

(단위: 건, 만원)

구 분	장애연금				
	50% 지급*		추후 나머지 50%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21년	800	1,013,105	77	63,539	9.6
'22년	752	942,476	73	63,024	9.7
'23년	786	957,379	83	72,682	10.6
'24년	718	779,093	60	39,629	8.4
'25년	661	653,011	32	25,300	4.8
합계	3,717	4,345,064	325	264,174	8.7

* 50% 지급 건수는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여 향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 국민연금 50%를 감액한 '우선 중복조정 건수'와 **법률에 따른 '중복조정 건수'가 합쳐진 수치임**

** 50% 지급 건수와 비교(추후 나머지 50% 지급 건수 / 50% 지급 건수)×100

○ **(나머지 50% 지급에 소요된 기간)**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중복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나머지 50%를 지급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유족연급 18.95개월, 장애연금 22.66개월**로 장기간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 **(중복급여의 환수)** 국민연금 100% 지급 후에 중복급여가 확인되어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일시금으로 환수하지 않고, 향후 지급될 국민연금에서 초과 지급액이 환수될 때까지 일정액(50%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의 1/2)을 감액(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본

문제점

○ 연금공단 지침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을 **법률의 규정에 비해 확대**하여 **국민 불편 등 초래**

- 「국민연금법」은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다른 법령(산재보험법 등 4개 법령)에서** 국민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 연금공단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급여(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임이 불명확한 경우**까지 **확대해석**하여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감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님에도, 추후 장애급여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1/2 감액

○ **환수금 최소화를 이유로 법률상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 연금공단은 산업재해의 급여 등 청구 없이 국민연금을 청구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처리

- 환수금 발생 최소화라는 **행정상 필요성을 이유**로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

○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사전 감액되어 **수급권자의 권익 침해** 및 **유족 등이 생계 곤란에 직면**할 우려

-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을 제한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익을 침해[7]할 소지

7)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9. 9. 선고 2019두53464 판결, 대법원

본

- 고령의 유족이나 생계의 대부분을 연금에 의존하는 수급자의 경우 장기간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 불안 심화

※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지급 건 중 50%만 지급하고, 다른 법령 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산업재해 불승인 등)에 해당하여 **추후 50%을 지급한 건은 2,207건, 그 금액은 약 91억 125만원**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최근 10년간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결정되어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의 50%만 지급한 후, 다른 법령 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산업재해 불승인 등)에 해당하여 나머지 50%를 지급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각 18.95개월, 22.66개월(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사망이나 장애의 원인이 산업재해 등과 무관함에도 연금공단은 산업재해 불승인 등이 결정되어야 국민연금을 100%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유족 등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복잡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우선 감액하여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민원 다수 발생

- **[민원사례]** 국민연금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가족의 수입원인 아버지가 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도 유족연금의 1/2을 지급 정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국민신문고, '26.1월)
- **[민원사례]** 소음성 난청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 심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1/2만 받았는데, 산재를 포기하면 중복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나머지 1/2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국민신문고, '26.4월)
- **[민원사례]** 부친이 출근길에 지병으로 사망하여 산재와 관련이 없는데도 공단은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942년생인 모친에게 유족연금의 1/2인 95,000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금을 모두 지급 받으려면 산재 신청기간인 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법 제113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국민신문고, '23.8월)
- **[민원사례]** 고인은 00구청 노인 일자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차량과 부딪혀 응급수술 후 요양 중 사망하였는데, 산재가 아니라는 확인이 있어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100% 지급된다고 하여 산재 신청(근로복지공단, '23.4월)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2 중복급여 조정을 위한 사전관리체계 미흡

현 황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과 산업재해 급여(연금)의 중복급여의 관리 및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유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관련 재해자 성명, 재해 발생일, 산업재해 승인 여부, 수급자, 급여(연금) 종류, 지급일 등 정보공유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중복급여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 발생

- 근로복지공단은 중복급여 조정을 위해 연금공단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

- 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더라도 향후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중복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관리하기 어려운 구조**

○ 이로 인해 연금공단은 산업재해 승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환수절차가 진행될 경우 **환수누락·지연 등의 문제 초래**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국민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국민연금 청구 당시부터 산재보험법 상의 중복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 호소(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본

3 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

현 황

○ 현행 연금공단 지침에는 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금공단은 실무적으로 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으나, 연금공단 지침에는 환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문제점

○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발생 시 50%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미흡**

- 현행 연금공단 지침은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중복급여가 확인될 경우에 대한 **환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복급여의 환수에 대한 사전안내 미흡

-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전액 지급받은 국민연금을 정상적인 지급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환수 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 및 민원 발생 초래**

본

Ⅳ. 개선방안

1 「국민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조정 기준 정립

○ **「국민연금법」** 제113조에서 규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한하여**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도록 **연금공단 지침 개정**

- 연금공단 지침에서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8](연금)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업무상 재해임이 불명확한 경우'를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중복급여 조정 대상의 확대 운영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정당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장 제도로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 강화

< (예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 개정(안) >

현 행	개 선 (안)
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및 시기	Ⅰ. (현행과 같음)
1.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Ⅰ. (현행과 같음)
①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다른 법령 상의 급여(보상)* 수급권자 동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 또는 유적연금과 다른 법령상 급여(보상)의 지급사유 동일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상의 급여(보상)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 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함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8) 「국민연금법」 제113조 각호의 사항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다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본

현 행	개 선 (안)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중복급여의 조성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급여의 조정대상이 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중복급여의 조성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조정대상이 됨
-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하여 6개월 주기로 재해보상금 수령여부를 확인함	-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되는 급여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치유될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됨	* (삭제)
Ⅱ.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업무처리 절차	Ⅱ. (현행과 같음)
1. 재해보상금 수령 후 급여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 재해보상금 수령사항 확인 후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 (현행과 같음)
2. 급여의 지급청구를 먼저 한 경우	2. 급여의 지급청구를 먼저 한 경우
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한 경우
○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하되, 추후 재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을 해제하고, 미지급분(1/2)을 추가 지급	○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거나 재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보류	* (삭제)

➠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 개정

2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산업재해 승인 단계'에서 **'산업재해 신청 단계' 까지 확대**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연금공단과 공유하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법 상의 급여(연금)의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구축**

- 연금공단은 공유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산업재해로 장해연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경우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및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전산시스템 개선**

3 중복급여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 마련

○ **중복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

- 국민연금 전액 지급 후 중복급여가 확인된 경우, 국민연금의 50%를 중복급여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초과지급된 국민연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명문화**

* 예시) 초과 지급된 국민연금이 환수될 때까지 향후 지급될 국민연금에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감액

- 이를 통해 **담당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급권자에게 환수절차 및 향후 수령액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본

○ **중복급여의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화**

-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향후 산업재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국민연금의 50%가 중복급여로 조정·환수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문을 통해 명확히 안내**

※ 안내문에 ①중복급여 발생 시 환수 대상, ②환수금 산정 기준, ③향후 국민연금에서 환수하는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단계에서 **환수 가능성과 구체적인 환수방법을 안내**하여 사후 환수에 따른 **수급권자의 불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

➠ **연금공단 지침에 반영**

본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부처	조치기한
1 「국민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조정 기준 정립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연금)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업무상 재해임이 불명확한 경우'를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지침」에 반영**	**국민연금공단**	27.9월
2 중복급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산업재해 신청 단계'까지 확대 ➠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전산시스템 개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26.12월
3 중복급여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 마련 ① 중복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지침」에 반영**	**국민연금공단**	27.9월
② 중복급여의 환수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화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지침」에 반영**		

본

붙임 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③ 생략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생략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3】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상실(고용종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구상권에 관한 자료

본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지침」

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및 시기

1.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요건

①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다른 법령 상의 급여(보상)* 수급권자 동일

② 장애 또는 유적연금과 다른 법령상 급여(보상)의 지급사유 동일

③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상의 급여(보상)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함

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중복급여의 조성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급여의 조정대상이 됨

-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하여 6개월 주기로 재해보상금 수령여부를 확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되는 급여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치유될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됨

Ⅱ.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업무처리 절차

1. 재해보상금 수령 후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 재해보상금 수령사항 확인 후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

2. 급여의 지급청구를 먼저 한 경우

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환수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으로 처리하되, 추후 재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우선 중복급여의 조정을 해제하고, 미지급분(1/2)을 추가 지급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거나 재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보류

견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⑥ 생략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

2.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카.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본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9월 21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흥 주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위 원 김 매 경

사본

정본입니다.

2026. 9. 21.

국 민 권 익 위 원 회